

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,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

2. 개정이유

-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유치 추진체계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, 보조금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기반시설 지원, 공유재산의 임대·매각 및 민원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 ~ 제9조)
- 라. 중복지원의 제한,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·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 ~ 제12조)
- 마.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·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 ~ 제19조)
- 바.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0조)
- 사.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의 설치·조성·용도·관리·운용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1조 ~ 제28조)
- 아. 보조금 지원·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함(안 제29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1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(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3층 306호 기업지원과(우 10930)

○ 전화 : 031)940-9723 / Fax 031)940-4539 / 이메일 km25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